

의안번호	제 259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0일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0일
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하고자 함.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관심 제고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- 또한 도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함(안 제4조)
-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-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

다. 협 의 : 노인장애인과

라. 비용추계 : 첨부제외 사유서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”을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”을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 산하 출자·출연기관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등에”를 “등(이하 “학교 등”이라 한다)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</u>」에 따라 <u>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</u>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중증장애인</u> <u>생산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<u>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</u>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<u>중증장애인</u> <u>생산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도 산하 출자·출연기관</u></p>
<p>제5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<u>한다</u>. 다만,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</p>	<p>제5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100분의 2이상이</u> <u>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</p>

<p>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우선구매 촉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6조(우선구매 촉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p>
<p>제8조(구매 협조 요청)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,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구매 협조 요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등(이하 “학교 등”이라 한다)에 ----- -----.</p> <p>② <u>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</u></p>

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
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
노력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
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
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(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○ 사 유

-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.
- 이에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